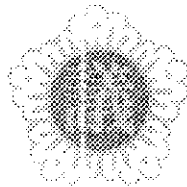


제225회 임시회
2004. 4. 2. (금)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 4. 2.(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3월 16일
- 회부일자 : 2004년 3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4. 3. 31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기능이 이관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존지가 불필요함.
-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이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적용을 받음으로 유사중복조례 폐지.

나. 주요골자

- 2001년 11월 30일자로 제정된 조례 제2683호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것과,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임.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관리가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지식산업진흥원에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

○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를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서,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충북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04. 1. 1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였으면서, 지금까지 동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사유와,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무상 사용하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토지
및 건물의 활용계획 및
앞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87
----------	-----

제출년월일 : 2004. 3.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폐지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기능이 이관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
-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이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적용을 받음으로 유사 중복조례 폐지

□ 주요내용

- 2001년 11월 30일자로 제정된 조례 제2683호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것과,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임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관리가 2003년12월31일로 종료되고 지식산업진흥원에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 : 따로붙임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조례제2683호, 2001.11.3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식산업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4. 첨단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창벤처프라자 관리 및 운영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지식·소프트웨어산업의 유치 및 육성 관련 사업
4.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기술, 정보, 인력, 자금 등 지원
5. 국내외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
6. 도지사가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 육성 사업
7. 중앙정부, 충청북도에서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 육성 사업